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새통일희망나눔재단

수 신 : 내부결재

제 목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의 건

1. 관련공문 : 통일부 정책지원과-934 (2017. 3. 26.)

2. 우리 재단은 지난 2014년 8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바

3.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조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정 후 2년마다 점검(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재단은 올해 점검대상에 해당함으로 통일부 요청 보고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공문 및 보고서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나. 제출기한 : 2018. 3. 31.(월)

다. 제출방법 : 공문발송(우편)

붙임 1. 발송공문(희망나눔 2017-2. 시행 2017.03.30.)

2. (사)통일희망나눔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끝.

(사)통일희망나눔재단

담당 오한별

상임이사 김현진

이사장 김태욱

협조자

시행 희망나눔 2018-2

(2018.03.30.)

접수

전화 (02)2141-1233

hjin@seeho.co.kr

/공개

우 135-958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702, 8층 TEL:02-2141-1233/FAX:02-512-008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통일희망나눔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82-18746
③ 대표자 성명	김태옥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ttp://www.seehonanum.or.kr	⑥ 사업연도	2016년도
⑦ 전화번호	02-2141-1233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8.4
⑨ 소재지	서울시 청담동 영동대로 702, 8층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22,561,909	8월	220,000	119,940	28,000,123
1월	2,670,000	5,913,872	19,318,037	9월	270,000	2,046,118	26,224,005
2월	2,320,000	4,312,822	17,325,215	10월	400,000	1,658,939	24,965,066
3월	3,029,0000	5,635,325	41,979,890	11월	30,000	7,913,755	17,081,311
4월	280,000	4,020,277	38,239,613	12월	40,643,770	44,948,551	12,726,530
5월	270,000	2,825,999	35,683,614	합계	77,916,683	87,702,062	12,726,530
6월	252,913	6,859,910	29,076,617	차기이월	-	-	12,726,530
7월	270,000	1,446,554	27,900,063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1월	통일리더 청소년 시력보전사업		하나원	2,525,700
2월	통일리더 청소년 시력보전사업		하나원	545,000
3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하나원	3,202,260
4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하나원	2,041,000
5월	울릉도 봉사 외		하나원	1,765,500
6월	통일리더 청소년 시력보전사업		하나원	6,187,500
7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하나원	1,329,794
9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하나원	1,559,600
10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하나원	527,360
11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하나원	7,056,830
12월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하나원	41,577,440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16년	북한이탈주민 안경지원사업	1,561	하나원	62,126,524
	통일리더 청소년 시력보전사업	444	울릉도 외	4,585,460
	울릉도봉사	350		1,765,500
	일반관리비(인건비/홈페이지 운영비 등)			19,224,578
합 계				87,702,062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⑳ 지출월	㉑ 국가명	㉒ 지급목적	㉓ 지급건수	㉔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㉕ 금액
㉖ 연도별	㉗ 국가명	㉘ 지급목적	㉙ 수혜인원	㉚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㉛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제출인: 사단법인 통일희망나눔재단



국세청장 귀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 사항			
① 법인(단체)명	(사)통일희망나눔재단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김태욱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8.4
⑤ 소재지	서울 청담동 영동대로 702 8층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seehon anum.or.kr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재단은 기부금 및 기부물품 전액을 탈북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였음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재단 정관 제 00 조(법인해산)에 규정하고있음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본재단의홈페이지 (http://www.seehon anum.or.kr)에 내역을 공개하였음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재단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않음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재단은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사업에 지출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제출인 : 사단법인 통일희망나눔재단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